

『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 춘 남 의원 외 9인

2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, 체계적인 학습서비스 지원을 비롯하여 각종 문화 및 체험학습 지원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건강증진 그리고 영양에 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

3. 주요내용

-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대상 규정(안 제5조)
- 센터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시설운영비, 종사자 인건비, 프로그램 개발비 등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(제8조)
- 구미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(제9조 및 제10조)
- 설치·운영중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·감독(제14조)

4. 참고사항

- 「아동복지법」 및 같은법 시행규칙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,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이용대상을 규정하고
-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
- 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
- 센터 사업의 지원 및 운영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아동의 보호·교육,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,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합적 지역아동 보호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